검수 규칙

제정 2020. 3. 3. (규칙 제3호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춘천문화원(이하 “문화원”이라 한다)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된 모든 물품과 공사에 대한 검수 및 검사기준을 정하여 관련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구매업무규칙을 통하여 조달되는 품목

2. 문화원이 발주한 건축설비 및 공사

3. 외부로부터 대여받거나 기증된 물자로서 문화원 관리하에 있게 될 물자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검수”라 함은 문화원에 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관계서류와 대조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일을 말한다.

2. “공사검사”라 함은 공사계약도서에 의한 이행여부를 확인 및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.

3. “공사계약도서”라 함은 도면, 시방서, 공사비내역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.

4. “공사”라 함은 건축, 전기, 기계, 설비공사 등을 말한다.

제4조(검수 및 검사기준서) 검수자 및 검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서에 따라 검수 및 검사업무를 시행하여야 한다.

1. 계약서

2. 지출결의서 또는 품의서

3. 시방서

4. 기타 공사계약도서

제5조(검수사 및 검사자) 검수 및 공사검사에 대한 총괄적 업무는 사무국장이 관장한다. 다만, 업무의 효율을 위해 물품의 검수에 대한 업무는 기획행정팀 물품관리담당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6조(사전지출 및 사용금지) 검수를 필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대금을 지불하거나 인수하여 입고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.

제7조(검수 및 공사검사사항) ① 검수자는 구매 또는 기증관계 서류와 일치여부를 검수하되, 주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구매품의 내용과 상이 여부

2. 구매물품의 품질, 수량, 규격 및 납품조건

3. 구매물품의 납기이행여부

4. 구매가격의 적정성 여부

5. 계약에 의한 구매 및 공사의 경우 업자선정의 공정성 및 계약금액의 적정성 여부

② 검수에 드는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위한 변형, 소모,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납품자의 부담으로 한다.

제8조(검수 및 공사검사원칙) ① 구매담당자는 검수자의 검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제반 서류를 검수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

1. 구입결의서(품의서)

2. 계약서

3. 사양서 또는 시방서

4. 납품서 또는 거래명세서

5. 기타 검수(검사)에 필요한 서류

② 검수담당자는 품질, 수량, 규격, 카탈로그 및 기타 납품조건의 합당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검수한다.

③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검수에 필요한 품질, 규격, 수량 등을 상세히 명시하여야 한다.

제9조(검수입회) ① 검수자는 특수 또는 정밀한 물품으로 전문적 감정이나 지식을 필요로 할 경우 공급자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의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입회자는 검수자와 공동책임을 진다.

② 운송업자에 의하여 배달된 물품으로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 운송업자 및 관계자의 입회하에 확인서를 작성하여 증거로 보관한다.

제10조(검수시기) ① 모든 물품은 주문하여 도착 완료된 후 검수한다. 단, 기계기구인 경우에는 설치 시운전 완료 후 검수한다.

② 시설공사의 휴일 자재반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수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지정된 인수자가 가검수 후 사후에 검수한다.

③ 수리용 부품 등의 물품은 반드시 부품의 교체 전에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.

제11조(검수거부) 검수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검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사유를 구매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빈번한 하자의 발생으로 문화원에 재정상의 불이익 또는 업무진행에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거래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.

1. 구입결의서 등 관계서류와 현품이 상이한 경우

2. 물품이 파손 및 변질된 경우

3. 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

4. 제6조에 의하여 아무런 사유없이 사전에 입고 또는 사용한 경우

5. 문화원 제규정 위반 등 기타 거부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

제12조(검사(수)조서) 검수자는 검수(사)가 끝난 후 지체없이 회계 규정 별지 제10호 서식의 물품검사(수)조서를 작성하여 구매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 (2020. 3. 3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시행한 검수처리는 이 규칙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